【 주간이슈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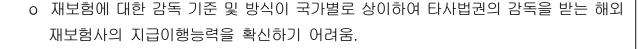
주요국 재보험감독기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

송윤아 연구위원

□ 재보험에 대한 감독 기준 및 방식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각국 감독기관은 타 감독당에 의해 행해지는 재보험감독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임.	
o 타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해외수재사의 지급불능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국가는 해외출재한도 또는 담보요건과 같은 진입장벽을 두는데, 이는 보험회사 효율적 위험전가를 저해함.	_
□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재보험감독기준의 구체화 및 국제표준화를 통해 재보험거리 안전도뿐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경간 거래를 촉진하고자 함.	H의
o IAIS는 2002년 '재보험사의 감독을 위한 최소요건 준칙'을 시작으로 이후 재보험 독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발표하였으며, 2011년 10월까지 재보험 및 기타 위 전가에 대한 준칙을 보험핵심준칙에 삽입할 예정임.	
o 재보험감독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각국이 타 감독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감독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 해외수재사에 적용된 진입규제 존치의 명분이 사리	•
□ 최근 EU, 캐나다, 미국 등도 해외수재사에 적용된 진입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 재보험감독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안전한 보험거래를 위해 재보험감독기준을 구체화·명문화하고 있음.	•
□ 이에 우리나라도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무조건적 진입장벽 설치보다는 재보험 실행괴 리에 대한 지침의 구체화·명문화와 재보험인정요건 강화를 통해 재보험거래의 안전되 제고할 필요가 있음.	
o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4월 국경간 재보험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졌으나, 보험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후속장치가 신속히 지원되지 않는 등 감독 사각지다 발생하여 각종 재보험사고에 노출되고 있음.	



2010.11.22 1. 서론 □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이하 IAIS)는 재보험에 대한 범세계적 감독체제 구축을 위해 재보 험감독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중임. o 2011년 10월까지 '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에 대한 준칙'을 보험핵심준칙에 삽입하고 재보험감독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할 계획임. □ 또한 최근 EU. 캐나다. 미국 등에서도 해외수재사에 적용된 진입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 함으로써 재보험감독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위해 재보험감독기준을 보다 구체화·명문화하고 있음. o EU는 2005년 EU재보험지침(Reinsurance Directive)을 발표하여 재보험 인정을 위한 담보 요건을 폐지하고 EU회원국으로 하여금 동 지침을 자국의 재보험감독기준에 반영토록 함. o 캐나다는 해외출재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'안전한 재보험 실행 및 관리에 대한 지침 (Guideline on Sound Reinsurance Practices and Procedure)'을 연내 발표할 예정임. o 미국보험감독관협의회가 발의한 '재보험규제현대화법 2009(Reinsurance Regulatory Modernization Act of 2009. 이하 NAIC Act라 함)'는 담보요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재보험 실행 및 관리에 대한 상세지침을 제시하여 재보험거래의 안전을 추구 □ 이에 본고에서는 IAIS와 주요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보험감독기준의 정비활동을 살펴 보고 국내 보험산업의 재보험감독 및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 2. IAIS의 범세계적 재보험감독기준 정비 활동 가. 재보험에 대한 범세계적 감독기준의 필요성



□ 각국 감독기관이 관할 재보험사에 행하는 감독의 가치와 동 사법권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

계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외재보험사의 자국진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함.

사의 안전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, 원보험사의 감독기관은 자국의 원보험사와 원보험



- o 이에 감독기관은 해외출재를 줄이기 위해 재보험인정요건으로서 해외수재사에게 수재 위험만큼의 담보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거나, 또는 해외출재비율을 제한함.
 - 출재에 대한 재보험인정이란 재보험준비금을 자산으로 계상 또는 부채에서 공제함으로써 출재사의 잉여금 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함.
- □ 그러나 원보험사는 효율적인 위험분산과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타사법권의 감독을 받는 해외재보험사에의 전략적 출재가 불가피함.
 - o 보험회사는 위험의 규모 대비 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을 통하여 수재사에 보상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경영의 안 정성을 확보하고 거대위험을 인수하여 사업확장을 도모할 수 있음.
 - o 원보험사는 국내재보험사가 수재할 수 없는 지역적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국내재보험 사에의 위험집중을 방지하거나 세제 및 규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재보험사에 전략적으로 출재함.
- □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명분으로 설치된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진입장벽은 원보험사의 효율적 위험전가 및 분산을 저해할 수 있음¹⁾.
 - o 재보험사들의 사업모델들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리스크 분포에 기반하고 있어서 충분한 전문성과 적절한 리스크관리기법 그리고 예상리스크에 대비한 자본력을 가진 재보험사가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경우 원보험사는 공정경쟁의 수혜를 입게 됨.
- □ 재보험의 국경간 공급을 촉진하여 원보험사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재 보험감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호인정체계가 필요하며, 이는 범세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통의 감독준칙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체화됨.
 - o 효과적인 감독인정체계는 감독기관들의 이중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보험거래의 이행비용을 줄이고 원보험사와 재보험사에 적용된 각종 요건을 제거하며, 이러한 의미에서 감독 인정체계는 시장접근을 촉진하고 시장효율성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음.
 - o 실효성 있는 상호인정체계가 존재할 경우 원보험사의 감독당국은 타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감독의 가치를 인정하여 재보험사에 적용된 불필요한 규제와 감독 요건을 제거하게 됨.

¹⁾ IAIS Reinsurance Subcommittee, "IAIS Guidance Paper 3.5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Reinsurance Supervision," October 2008.



o 재보험감독의 상호인정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합의된 재보험 감독준칙을 수립하되, 준칙내용을 구체화·명문화할 필요가 있음.

나. IAIS의 재보험감독기준 수립활동

재보험감독에	대한	실효성	있는	상호인	!정체계	수립의	필요성	성을 인	식한 1	AIS는	재보	험에
대한 범세계적	! 감독	기준을	마련	하고자	2002년	'재보호	성사의	감독을	위한	최소요	건 :	준칙'
을 시작으로 (기후 J	대보험 :	감독에	네하	세부 기	I준과 X	I침음	발표한	•			

- o 재보험사의 감독을 위한 최소요건 준칙은 재보험사에 대한 감독이 재보험사의 기술조항, 투자 및 유동성, 자본요건,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재보험사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.
- o 이후 IAIS는 원보험사의 재보험담보평가와 재보험사의 담보력에 대한 감독기준,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위험공지에 대한 기준,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투자 위험 및 성과공시에 관한 기준, 위험이전·공시·금융재보험 분석에 관한 지침, 재 보험감독 상호인정에 관한 지침, 캡티브사에 대한 규정 및 감독에 대한 지침 등 을 발표함.
- □ 나아가 IAIS는 2011년 10월까지 '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수단에 대한 준칙'을 보험핵심 준칙 13조(이하 "ICP 13조"라 함)로 삽입할 예정임².
 - o '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수단에 대한 준칙'은 감독당국이 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수 단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세워 보험자가 위험전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신고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, 관할내 재보험사 감독시 재보험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³⁾.
 - o 현행 보험핵심준칙 2003에는 재보험감독에 대한 준칙이 존재하지 않고 보험활동에 대한 준칙(ICP 19조)에서 위험전가 수단으로 재보험을 언급함.

³⁾ 해당 준착·기준·지침은 수정, 보완 중이며, 인용내용은 2010년 6월 IAIS 웹페이지에 게재된 ICP 13 Draft를 참조함. '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수단에 대한 준착'은 다음의 감독기준으로 구체화 됨: ① 감독당국은 원보험자가 자사의 규모, 성격,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 및 위험전가전략을 세우고 그러한 전략이 실제로 실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하는지 를 감독해야 함; ② 감독당국은 원보험자가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위험을 투명하게 관리, 운영하여 고객, 주주, 감독당국에 해당 계약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함; ③ 감독당국은 감독시 상호인정협약 뿐 아니라 재보험사 및 거래상대방의 특징을 고려해야 함; ④ 감독당국은 재보험계약의 이해당사자들이 주요 합의사항과 담보조건을 신속히 문서화하고 재보험계약을 적시에 마무리 짓는지를 감독해야 함; ⑤ 감독당국은 원보험사가 위험전가의 계약 및 지급 구조를 고려하여 유동성을 관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함; ⑥ 보험위험이 자본시장으로 전가될 경우 감독당국은 그러한 위험전가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함.



²⁾ IAIS Reinsurance Subcommittee, "Consultation on New Structure for the Insurance Core Principles," October 2009.

	- ICP 19조는 "보험은 위험을 인수하는 행위로서 보험자는 인수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재보험을 통해 관리해야하며,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산출하기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"고 명시함.
	□ 요컨대, IAIS는 재보험감독기준의 구체화 및 국제표준화를 통해 재보험거래의 안전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경간 거래를 촉진하고자 함.
3.	주요국 재보험감독기준의 변화 동향
	가. EU
	□ EU내 재보험에 대한 규제가 개별국가수준에서 결정됨으로써 재보험 영업과 감독에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EU는 재보험감독에 대한 회원국간 상호인정의 필요성을 절감함.4)
	o 국가간 상이한 재보험감독기준은 불필요한 진입장벽의 도입을 초래함.
	□ 2005년 재보험감독에 대한 EU 회원국간 상호인정을 위한 재보험지침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국들은 2007년 12월까지 동 지침을 자국법에 반영토록 요구됨.
	 ○ 동 지침은 재보험사가 자국에서만 규제를 받고 한 회원국에서 영업을 하면 그외 모든 회원국에서도 영업할 수 있음을 명시함. ○ EU회원국간 재보험감독의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EU 재보험지침은 재보험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서부터 재보험사업을 지배하는 여건에 이르기까지 재보험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술함. ○ EU회원국간 표준화된 재보험감독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타회원국 관할의 재보험사에게 부과된 각종 진입규제의 명분이 사라짐. - 동 지침은 타회원국에서 영업하는 회원국의 재보험사에 대해 담보요건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EU는 늦어도 모든 회원국이 2008년 12월까지 담보요건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.
	□ EU 재보험지침 발표 당시 EU회원국 중 소수만이 담보요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에서 담보요건 폐지를 명문화한 것은 해외수재사에 담보설정을 요구하는 타 감독당국을 압박하기 위함(Evans, 2007).

4) Evans, Alastair M., "The EU Reinsurance Directive," *The Geneva Papers*, 2007.



- o 현재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은 해외수재사의 담보설정을 재보험인정요건으로 둠.
- o EU가 재보험지침을 통해 재보험감독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EU내 재보험 단일시장을 구축한 것은 제3국과의 협상 또는 국제포럼에서 EU의 협상력을 높 이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적도 있었음.
- o 실제로 EU는 재보험감독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정이 회원국의 이익과 부합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OECD, WTO, IAIS 등을 통해 재보험에 대한 범세계적 감독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선제적으로 행동함.

나. 캐나다

- □ 각국 감독기관간 재보험에 대한 감독기준이 상이하고 이로 인해 해외재보험사의 이행능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는 출재한도와 담보요건 등을 통해 자국원보험사의 해외출재를 직·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⁵⁾.
 - o 현재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손해보험사는 인수위험의 25%이상을 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사에게 출재할 수 없으며 해외재보험사가 캐나다 원보험사의 위험을 수재할 경우 담보를 설정해야 함.
 - o 이러한 규제는 다국적 고객을 가진 캐나다원보험사와 해외수재사에게 장애로 작용함.
- □ 재보험감독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0년 감독당국(OSFI)은 25% 해외출재한도 규제를 폐지하되 최근 금융위기를 감안하여 담보요건의 삭제 를 유보하기로 결정함⁶⁾.
 - o 25%해외출재한도 규제를 제거하는 대신 담보요건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타사법권의 감독을 받는 재보험사의 지급불능위험을 방지하고자 함.
 - o OSFI는 담보요건의 삭제를 유보하였지만, 위험도별로 해외재보험사의 담보설정 요구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.
- □ 다만 해외출재한도규제 폐지가 재보험거래지침의 구체화를 선결조건으로 하는 바, 감독 당국은 현행 'Guideline B-3'을 보완한 '안전한 재보험 실행 및 관리에 대한 지침'을 연내 발표할 예정임.

⁶⁾ OSFI, "Response Paper: Reforming OSFI's Regulatory and Supervisory Regime for Reinsurance," March 2010.



⁵⁾ OSFI, "Discussion Paper on OSFI's Regulatory and Supervisory Approach to Reinsurance," December 2008.

- o 현행 Guideline B-3는 생명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에게만 적용될 뿐 아니라 재보험계 약의 전략·실행·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보완이 불가피함.
- o 안전한 재보험 관리 및 실행에 대한 지침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함 으로써 부적격 해외재보험사에게의 출재를 방지하고자 함.
 - 동 지침은 재보험운영전략, 재보험사의 적합성 평가 기준, 재보험거래 모니터 링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, 안전한 위험 관리 및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, 이사회의 역할, 감독당국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.
- □ 또한 재보험거래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 재보험특약서상에 지급불능약관과 재보험중개자 약관을 삽입하는 것을 재보험인정요건으로 고려중 임.
 - o 지급불능약관은 출재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라도 수재사는 청산인 등에게 재보 험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취지의 약관이 재보험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은 계약에 대해서는 재보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임.
 - o 재보험중개자약관은 재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중개자에게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 재보험 사가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조항이 재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 어야 재보험거래로 인정한다는 것임.

다. 미국

- □ 미국 보험사의 해외출재거래가 재보험으로 인정되려면 거래상대방인 해외재보험사는 지 급준비금만큼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지급이행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.
- □ 2009년 NAIC는 해외재보험사의 담보요건을 위험에 근거하여 부과할 것을 규정한 NAIC Act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현행 담보요건을 완화하고자 함".
 - o 해외재보험사의 미국내 관할주감독당국 또는 자국감독당국은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, 영업관행, 과거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보험사에 대한 안전도등급을 결정하며 등급별로 당보요건을 결정함.
 - o 동 법에 따르면 안전도 1등급의 해외재보험사는 미국 원보험사의 위험 수재에 따른 담보설정의무가 없음(재보험사의 안전도 1등급: 0%, 2등급: 10%, 3등급: 20%, 4등급: 75%, 위험등급: 100% 적용)
 - o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구체적으로 재보험사를 규제하는 최초의 연방법이 될 것임.

⁷⁾ NAIC, "Reinsurance Regulatory Modernization Act of 2009," 2009.



- □ NAIC Act는 담보요건 완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내 일개 주가 해외수재사를 직접 감독하고 해당 재보험사의 안전도 심사시 소재국과 미국내 관할 주의 감독체계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을 명시함.
 - o NAIC Act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재보험사는 각각 미국내 일개 관할주의 감독을 받으며 재보험감독이 허용된 주는 재보험활동에 대한 NAIC 모델법을 수용해야 하며 주마다 동일한 감독기준을 적용해야 함.
 - o 미국내에서 영업하는 재보험사를 감독할 주를 심사·승인하고 각 주에 공통으로 적용될 재보험사 평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NAIC Act는 재보험감독심의회(Reinsurance Supervision Review Board)의 설립을 명시함.
 - o 또한 해외재보험사에 대해서는 소재국 뿐 아니라 미국내 관할주의 감독체계까지 심사하도록 함.

4. 우리나라 재보험감독에 대한 시사점

- □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4월 국경간 재보험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진입장벽이 제거되었음.
 - o 재보험자유화 정책에 따라 1997년 4월 국내우선출재제도, 보험요율구득제도 등이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음.
 - 현재 국내시장에는 국내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 리와 뮌헨재보험, 스위스재보험, 퀼른재보험, 동경해상보험 등 해외재보험사들이 기존의 기존의 주재사무소를 지점 형태로 전환하여 재보험영업활동을 하고 있음.
- □ 해외재보험사의 국내 진입이 자유화된 후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후속장치가 신속히 지원되지 않는 등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.
 - o 재보험계약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 2005년 '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'이 마련되었으나 동 규준의 경우 지침으로서의 구체성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실효성이 떨어짐.
 - o 재보험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로 인해 각종 재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.
 - 재보험 중개사의 사기, 해외 재보험사의 부실, 선수금환급보증보험(RG)의 재보험요율 부실산정, 내부직원의 중개수수료 횡령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보험사고 발생
 - o 재보험관리 부실문제가 불거지자 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.
 - 2010년 5월부터 손해보험사에 적격 재보험사 리스트를 제공하여 해당 재보험사에 출재할 경우 책임준비금 면제 혜택을 주는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제도를 실시함.



- □ 해외재보험사에 대해 진입장벽을 설치하기보다는 재보험 실행과 관리에 대한 지침의 구 체화·명문화와 재보험인정요건 강화를 통해 재보험거래의 안전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.
 - o 재보험거래의 안전도 제고를 명분으로 담보요건 규제 등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국 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조치로, IAIS가 공개한 '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에 대한 준칙'과 동 준칙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현행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
 - 주요국의 경우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및 폐지의 보완책으로서 자국 원보험사의 재보험사 선정 및 평가와 해외재보험사의 국내영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재보험거래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음.
 - o 특히, 재보험사와 재보험중개사의 선택 및 평가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명문화할 필요 가 있음.
 - o 또한 재보험특약서상 지급불능약관과 재보험중재자약관을 삽입하는 것을 재보험인정 요건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. **KiRi**

